

#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2024.7.23.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단법인 기본사회



#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 CONTENTS

<b>개회사</b>	강 선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
<b>축사</b>	박 주 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
	김 재 형 사단법인 기본사회 연구단장	8

### 제1섹션

<b>좌장</b>	정 균 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	
<b>발제</b>	아동자산형성제도와 기본소득, 교차와 격차	11
	유 동 철 동의대 교수	
<b>토론</b>	서 정 희 군산대 교수	25
	함 상 완 변호사	33

### 제2섹션

<b>좌장</b>	정 균 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	
<b>발제</b>	현행 아동수당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미성년을 위한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서 봉 균 성균관대 교수	
<b>토론</b>	윤 형 중 랩 2050 대표	51
	김 수 호 마음한장 프로덕션 대표	59

# 개 회 사



**강 선 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입니다.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찾아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시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멸종위기 국가’입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약 320조 가량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반복되는 정책 실패를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국가 소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해결책 모색이 시급합니다.**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생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편복지의 시작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장년→중년→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액과 대상을 법적 기준인 18세까지 확대하고, 선별복지의 한계를 가진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두터운 보편복지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님을 비롯해 발제자로 나서주신 유동철, 서봉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시며 지혜를 모아주실 네분의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인 투자이자 국회의 역할입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수당 확대와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한 출생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 축 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선우 국회의원님과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함께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해결책 모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해왔습니다.

보편복지인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국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 및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에서 주도하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문가분들과 참석자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축 사



**김재형** 사단법인 기본사회 연구단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18년간 저출산에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통계 집계 숫자인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구학자들이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한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 감소, 젊은 세대의 과도한 세 부담,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갈등, 지역대학 소멸 및 지역 자체 소멸의 가속화 등이 예견되고 이는 결국 국가소멸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많은 선진국도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과도한 경쟁 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 출산과 양육은 자동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으로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의 시행,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환경 개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위기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느껴집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의 출생 기본소득 3법 외에도 효율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현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더 효율적인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주범에 해당하는 수도권 집중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환경의 개혁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해소 없이는 어떤 저출산 정책도 사실상 미봉책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출생 기본소득 3법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대전환기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첫 단추에 해당하는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이후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립, 거대한 괴물로 자리 잡고 있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선우 의원님! 오늘 토론회 섭외를 해주신 김세준 부이사장님! 그리고 뻘뻘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정균승 사단법인 기본사회 연구단 부단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유동철 교수님과 서봉균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서정희 교수님, 함상원 변호사님, 윤형중 대표님, 김수호 대표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애를 써주신 함효건 실장님과 이루다 사무국장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쪼록 유익하고 희망찬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사단법인 기본사회 연구단장 김재형



#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S E C T I O N 1

**발 제**

## 아동자산형성제도와 기본소득, 교차와 격차

유동철  
동익대 교수



# 아동자산형성지원제도와 기본소득, 교차와 격차

유동철(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더불어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장)

## Contents



01

### 불평등의 확산

- 01 자산의 불평등
- 02 소득의 불평등
- 03 불평등 추이



02

### 기본자산과 기본소득

- 01 기본자산의 정의
- 02 기본소득의 정의
- 03 교차와 격차



03

### 출생기본소득

- 01 제안배경
- 02 법률안 검토
- 03 소요예산 추계



04

### 쟁점과 과제

- 01 출생기본소득?
- 02 재원은?
- 03 부자에게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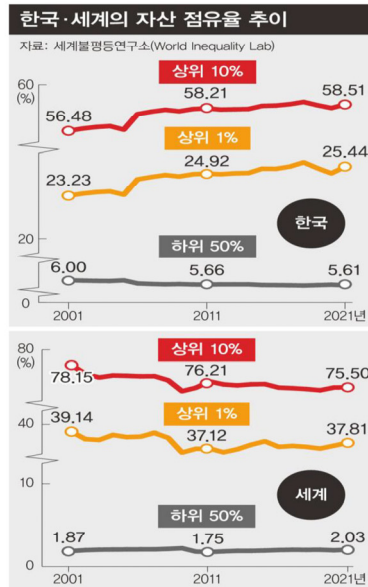
# I. 왜 지금?

1. 자산의 불평등
2. 소득의 불평등
3. 불평등 추이

| 왜 지금?

## 01 자산의 불평등

- 상위 10% 가 전 세계 자산 75.5%. 하위 50%는 2% 점유.
- 한국은 각각 58.5%, 5.6%
- 한국은 지속적 악화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2020 -

| 왜 지금? |

## 01 자산의 불평등

- 우 리 나 라 상 위 20%의 평균 자산 16억 5천만원, 하위20%는 2천6백만원으로 64배 격차
- 순 자 산 지 니 계 수 가 0.606으로 2012년(0.617)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음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2020 -

5

| 왜 지금? |

## 02 소득의 불평등

- 상위 10%가 전세계소득 52.2%. 하위 50%는 8.4% 점유.
- 한국은 각각 45%, 16%
- 한국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하위 50%의 14배. 프랑스(7배) 이 탈 리 아 (8 배) 영 국 (9 배) 독일(10배)



“결정적 문제는 불평등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기원이요, 정당화 도식이다” -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2020 -

6

## 03 불평등 추이

### 토마 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2020)

“인도-미국-러시아-중국-유럽의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상위 십분위의 점유율이 1980년에 이들 5개 지역 각각에서 총소득의 25~35% 정도에 놓였다는 것, 그리고 2018년에는 35~55% 정도에 놓인다는 것이 확인된다(p.37)

### 통계청, 2022년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토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2%로 상위 20% 가구(5.4%)의 절반.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2020년 5.85배에서 지난해 5.96배로 악화

하위 20% 가구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공적 이전 소득)이 전년 대비 1.5% 감소

7

## II. 기본자산과 기본소득

1. 기본자산의 정의
2. 기본소득의 정의
3. 교차와 격차

8



## 01 기본자산의 정의와 명칭

- 일시적인 현금 배당
- 명명
  - 액커만과 알스토트(1999): 사회적 지분 급여(stakeholders grants)  
21세에 8만달러 지급. 자유로운 용처.
  - 르그랑과 니산(2000) : 데모그란트(demogrant)  
18세에 1만 파운드 지급. 자산및교육비 계좌
  - 토마 피케티(2020) : 자본 지원(capital endowment)  
**25세에 부유국 기준 12만유로(1억6천만원)**  
**평균자산의 60%**
  - 정의당(2020):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아동양육시설 5,000만원, 용처자유

## 02 기본소득 정의와 5대원칙

-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BIEN, 2016).
- 5대원칙
  - 보편성
  - 무조건성
  - 현금성
  - 정기성
  - 개별성
  - (충분성)

## 03 교차와 격차

###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1516)

- ▶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추방되지 않는 한 평등하고 공평한 분배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우리들 사이에 완전한 행복도 확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유재산권이 존속하는 한 대다수 인간의 등에는 가난과 고난이라는 피할 길 없는 무거운 짐이 언제나 남아 있겠지요(라파엘)

### 토마스 페인, 토지정의(1796)

- ▶ 토지를 인류에게 주어진 공동 자산으로 보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공적으로 징수하여 공동자산에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자
- ▶ 건물이나 개간된 농지는 가치를 증대시킨 사람의 정당한 소유로 볼 수 있지만 그가 토지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 ▶ “국가 기금National Fund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21세가 되면, 토지 소유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상실한 자연적 상속권에 대한 부분적 보상으로 15파운드스털링을 지급한다. 그리고 매년 10파운드스털링을 현재 50세에 달한 사람과 앞으로 그 연령에 도달할 모든 사람에게 남은 일 생에 걸쳐 지급한다.”

11

## 03 교차와 격차

### 교차

- ▶ 공유부 배당(사적 소유권과 세습의 부당성 지적)
- ▶ 불평등에 대한 보편적 처방
- ▶ 보편성, 현금성과 개별성

### 격차

- ▶ 자산 대 소득
- ▶ 일시성(목돈마련) 대 정기성(생활유지)
- ▶ 조건성(투자) 대 무조건성(자유)

12

### Ⅲ. 출생기본소득

1. 제안배경
2. 법률안 검토
3. 소요예산 추계

| 출생기본소득 |

## 01 제안배경

### 이재명(2024신년기자회견)

- ▶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
- ▶ 현행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곧 출생기본소득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는 것..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반을 마련해주자

### 강선우의원(6/16법안발의)

- ▶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태어나는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 ▶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

## 01 제안배경

- 현재 아동자산형성지원 제도의 선별성 극복.
- 현행제도
  - 대상: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장 및 기초수급아동
  - 적립: 월50만원 이내 아동적립금의 2배를 정부가 지원(10만원한도)

15

## 02 법률안 비교

### 강선우 의원

- ⓪ 명칭: 자산형성지원사업
- ⓪ 적립: 출생아 1인당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 부모 일정액 매칭 적립 가능
- ⓪ 차등적립제: 취약 계층 아동에 가능
- ⓪ 용처: 학자금 등 자립용도 제한

### 임광현 의원

- ⓪ 명칭: 우리아이자립펀드
- ⓪ 적립: 출생아 1인당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 부모 10만원 이하 매칭 적립 가능
- ⓪ 차등적립제: 없음
- ⓪ 용처: 제한 없음
- ⓪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세와 보호자적립금 증여세 미부과

16

| 출생기본소득 |

## 03 소요예산 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 평 균
자산형성지원사업 우리아이자립펀드	7.6	7.4	7.1	6.8	6.6	35.5	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7

## IV. 쟁점과 과제

1. 출생기본소득?
2. 재원은?
3. 부자들에게도 지원?

## 01 출생기본소득?

- 출생기본소득 = 기본자산 + 부분기본소득(아동수당) ?
- 기본자산은 기본소득과 이념은 같지만 원칙이 다른 제도
  - 기본소득의 보편성, 현금성, 개별성 원칙에 부합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기본사회 = 기본자산[적립(자본) 및 대출(부채)] + 기본소득 + 기본서비스(돌봄,보건의료,교육,고용, 주거, 문화, 환경)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제 3조)

## 02 재원

- 토마 피케티 : 누진적 상속세, 재산세, 소득세 제안
- 우리는?
  - 1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활용(법인세 감세 60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예,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시동 저지

장기적으로 기본자산이 공유부의 배당과 부의 세습을 막는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재산세를 재원으로 해야 함

### 03 부자들에게도 지원?

- 1안)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
  - 2안) 클로백(Clawbacks) 제도 도입 :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과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서 기본자산 환수
  - 임광현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부모적립금에 대한 증여세 미과세는 재고 필요(증여세 부모 공제액 10년간 5천만원)
- \* 영국의 아동신탁기금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가 부자들의 증여세 비과세로 인한 부의 불평등 완화 효과 논란임

감 / 사 / 합 / 니 / 다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S E C T I O N 1

토론

서정희  
군산대 교수



## 출생 기본소득 3법의 의미와 전략

서정희 군산대 교수

-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첫발을 내딛는 단계가 될 것 같아서,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이 있을 듯 합니다.
- 출생 기본소득 3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자산 제도와 범주형 기본소득 제도의 병합이라 볼 수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강선우의원 대표발의법률안(의안번호 제486호)과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555호)은 각각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로 명명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근간은 기초자산임.
- 기초자산 제도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제도임. 또한 정책은 경로의존성도 있고, 상쇄관계(trade off)도 존재함. 왜 기초자산 제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강선우의원안의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적립하는 사업”(안 제42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에 관한 강선우의원 대표발의법률안에서 아동수당을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10만 원을 늘려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하고 있음. 그렇다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인 월 10만 원을 아동수당에 반영하여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동일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아동수당 30만 원이 아니라 아동수당 20만 원 + 자산형성지원 10만 원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함. 또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동일 예산으로 청년기본소득(18세부터 35세) 10만 원의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초자산 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함.
  - 기초자산 제도를 시행할 때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만 원씩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18세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면 되는데, 굳이 적립방식을 채택하는 제도적 설계의 잇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 임광현의원안의 경우 더 우려가 되는데,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투자매매업자,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가 정부 예산을 매년 7조씩 금융시장에 지급하는 형식이 됨. 매년 18세 아동(청년)에게 지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0세 아동의 경우 18년 동안 인출할 수 없는 급여를 금융기관에 강제 예탁하는 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야 함.

○ 기초자산은 기본소득에 비해 장점이 적은 제도임(서정희, 2021)

〈표 1〉 기초자산 주요 주창자와 내용

주창자	출처	연령	액수	용처 제한 및 조건성
액커만과 알스토트	Ackerman & Alstott (1999) Ackerman & Alstott (2006a, 2006b)	21세	8만 달러 (2만 달러씩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음. 단, 창업, 교육, 주거비 등 예시함.</li> <li>• 고등학교 졸업자,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li> </ul>
르 그랑과 니산	Le Grand & Nissan (2000) Le Grand (2006a).	18세	1만 파운드	교육, 주거비, 창업 등의 용도에 대해 신탁관리자가 심사, 승인
엡킨슨	Atkinson, A. B. (1972). 엡킨슨 (2015)	은퇴 시/18세*	명확하게 금액을 명시하지 않음.**	최저 상속의 사용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화이트	White (2011; 2015) White (2006)	연금 없음	3만 파운드 기초자산 + 2만 파운드 한시적 시민수당	기초자산: 교육, 직업훈련, 창업 등의 목적
피케티	Piketti, T. (2020)	25세	성인 평균 재산의 60% (선진국의 경우 1인당 12만 유로, 한화 1억 6천만 원)	없음.

출처: 서정희(2021)

-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은 공유부 배당이라는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나, 성인이 되는 시기에 1회성 목돈으로 지급하느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급여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두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존재함.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이하의 내용은 서정희(2021) 논문의 일부),
- 투자자로서의 인간 vs 일상의 유지 및 계획

- 급여를 소진하지 않고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 특히 일정한 지분을 운용하는 자산운영은 계층 문제와 관련이 있음. 빈곤 가정 출신의 사람은 자산운영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의 축적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전승하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사람보다 지분 소진이 훨씬 쉬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초자산 급여의 문제는 결국 자산 관리 능력의 문제로 치환됨(Wright, 2006: 72-73). 기초자산 소진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창업이나 자산운용 등으로 기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소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계층과 관련 있는 자산 관리 능력을 요구.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기초자산의 활용 능력을 위해 부유층 출신 청년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자산 관리 능력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기초자산 급여의 유지를 돕겠다는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들을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투자자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전제. 한국 사회에서 주식 투자 열풍에 기대어 종편 방송에서 주식투자 기법과 종목에 대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음.
  - 시장주의의 극대화와 복지국가의 기반인 연대성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정관리를 하는 것이 자산을 늘리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보다 연대적인 비시장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개혁을 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확대 전략에 어떤 함의가 있을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모든 사람들이 작은 규모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산 증식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는 자산 증식을 통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시스템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
- 기초자산을 통한 자산 불평등 축소 방식의 한계
- 기초자산 주창자들 대부분은 기초자산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함. 자산 불평등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전체 부에서 자본소득 분배율이 노동소득 분배율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197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자본소득 분배율은 상승(서스킨드, 2020).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부가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되기보다 자산 소유자에게 점점 더 많이 분배되고 있다는 것.
  - 전자의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주요 용처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서 임금 수준을 높이고,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 후자의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산 분배 자체가 자산 보유자 간의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자의 자산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개입을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서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은 임금 노동의 축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총 노동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서정희, 2020b). 노동분배율이 대폭 하락한 이유는 기술 진보로 인해 기업들이 노동보다 전통 자본을 더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는 노동분배율의 하락의 원인 중 80%를 설명(서스킨드, 2020: 200). 이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임금 수준을 올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미 학력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올리긴 어려움.
- 후자의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한계. 자산의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민간 자산의 증가와 공공자산의 축소. 피케티를 포함한 불평등 연구자들의 집단 보고서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자산의 상대적 크기는 불평등 수준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알바레도 외, 2018: 19)으로 지목. 공공부문 자산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공기업이나 준공기업의 주식 등의 공공자산 상당 부분이 민영화로 인해 공공부문 자산의 크기는 축소되거나 유지되었고, 민간부문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알바레도 외, 2018: 제3부 제1장). 동시에 조세의 누진성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에서 급속히 하락하여 불평등 가속화에 기여(알바레도 외, 2018: 제5부 제2장).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조세의 누진성 강화이고 특히 최고한계세율의 강력함을 보여줌. 이러한 분석에 근거할 때 기초자산을 통한 자산 불평등 완화는 쉽지 않아 보임. 주택 구입, 창업 등의 용도로 제한된 기초자산이든 용도 제한이 없는 기초자산이든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산 증식을 위한 제도로 기능. 또한 기초자산이 자산 불평등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와 누진세 강화를 전제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처럼 증세 없이, 현재의 상속세만을 재원으로 기초자산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자산 불평등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

- 기초자산 용처로서의 교육, 창업, 주거는 적절한가? 이를 사회서비스 확대로 풀지 않고, 기초자산의 현금급여로 지급할 때 많은 시장화와 부작용이 수반됨.
- 예를 들어 주거 문제를 기초자산 지급을 통해 시장에서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주택 부문에 사용되는 기초자산은 부유한 부모가 없는 청년들의 모기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적 방법으로서 시장 중심성과 사적 소유권을 확고히 하는 방식(Wright, 2015: 436-437). 이와 달리 저비용주택을 인수하기 위해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trusts)을 만드는 것,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의 대안은 정의를 향상시키고 시장 주도의 주택 논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이 됨.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되는 것은 주택 가격(알바레도 외, 2018; Cowell et al., 2018). 한국의 경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 요인(남기업, 2021; 이원진, 2021).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소득(잠재 자본이익+임대소득)은 GDP대비 연평균 30.8%에 해당할 정도로 한국의 부동산소득의 규모는 매우 큼(남기업, 2021). 자산 불평등의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설명되지 않은 국가 효과’이고, 스웨덴과 같이 자산의 절대적 격차가 작은 국가는 자가 주택의 약 1/3이 거주자 소유 협동조합 부분인 점, 부세 폐지와 상향된 재산세율로 주택 자산을 취득하고 축적하려는 동기가 낮아진 점,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보건, 교육, 연금, 소득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이 낮은 절대적 자산 격차의 요인으로 꼽힘(Cowell et al., 2018). 기초자산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숙고가 필요. 특히 한국에서처럼 부동산 시장이 부의 주요 원천이고 가격 자체가 높은 국가에서(강남훈, 2020)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점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함.

## 참고문헌

서정희 (2021). “기본소득론 관점에서 본 기초자산”. 『한국사회정책』, 28(2), 13~51.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S E C T I O N 1

토 론

함상완  
변호사



# 출생기본소득 관련 법안의 법률적 쟁점

함상완 변호사

## 1. 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basic income)<sup>1)</sup>에 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이며 자본주의의 정수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sup>2)</sup>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점차 발생할 수 밖에 없고<sup>3)</sup>, 이러한 양극화가 계속될 경우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2. 기본소득의 방향 및 재원마련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므로 지원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기본소득 정책을 현재 저출산, 인구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①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sup>4)</sup>, ②20대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진 정부(지방정부 포함)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 
- 1)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공식적인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없이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 2) 2017. 1. 18.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UN 비정부자문기구),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도 가이 스텐딩 런던대 교수,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 교수 등이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3)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자본소득(임대료, 배당, 이자, 금융소득 등)이 노동소득(임금, 보너스)을 초과하여 소득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4)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2018,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 토론문(강병익, 민주연구원)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며, 선별주의 보다는 보편주의가, 균등지급 보다는 자녀수, 연령에 따른 차등주의가 다수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원마련의 경우, 토지보유세 신설<sup>5)</sup>, 탄소세 도입<sup>6)</sup>, 현행 세제의 개혁<sup>7)</sup> 등이 주요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방안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조세저항이 크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에 과세<sup>8)</sup>하는, 그리고 근로소득을 낮추는 부분에 과세<sup>9)</sup>하는 방안으로 설계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부합하리라 생각됩니다.

### 3. (출생)기본소득 관련 법안의 법률적 쟁점

#### 가.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내용적 측면

현행 아동수당법<sup>10)</sup>에서 진일보한 강선우, 임광현 의원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①기간적인 면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②지급액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나. 관련 법령의 체계화, 통합화: 체계적 측면

기존 아동수당 관련 법령<sup>11)12)13)</sup>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법령을 체계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합법령을 성안한 대표발의 의원의 이름을 네이밍하는 바도 고려할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 5) 토지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 민간 보유 토지가치인 7,000조원의 0.5%의 세율만 부과해도 약35조의 토지보유세를 징수할 수 있으나,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 6) 탄소세는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추정, 탄소라벨링 제도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처럼 최종 소비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7) 소득세 내에서의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 8) 미국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es)의 경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자산을 판매하여 얻는 단기자본이득 보다 1년 이상을 보유한 장기자본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9) 로봇세는 미국과 프랑스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10) 「아동수당법」 2018년 3월 제정 당시 경제적 수준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였고, 수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11)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위임입법 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법에 규율하는 것이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아동수당법 등을 포함한 관계법령의 지급방식: 절차적 측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에서 제·개정된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등에서 산재한 지급대상과 범위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단일화하여 18세 미만 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령에 위임하는 바를 최소화<sup>14)</sup>하여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펀드식으로 지급할 경우, 수익자 측면에서 자신이 해당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행정청에서도 이러한 법령해석과 펀드개설을 위한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하며, 부수적으로 인적공제 등 세법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일괄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 ①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아동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 12) “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2024.4.2.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6>
- 13) “충주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10만원 지급”(2021.12.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7040100064>
- 14)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제42조와 같이, 지원대상과 범위, 지급액을 부령에 위임할 경우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반면 관련 예산의 삭감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지급액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개념인 무조건적으로, 심사없이 라는 부분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 4. 결 어

저출산, 인구소멸, 양극화, 자동화 등의 문제와 맞물려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의 방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범위, 그리고 관계법령의 제·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S E C T I O N 2

발 제

현행 아동수당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성년을 위한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서봉균  
성균관대 교수





# 현행 아동수당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아동을 위한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

서 봉 균 성균관대 교수<sup>1)</sup>

- 아동수당의 목적에 맞게 지급대상과 금액 확대
- 아동수당을 아동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수당을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

## 1. 아동수당(법)의 도입

### □ 아동수당의 개념

-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건없이 모든 아동에게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한국에서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부터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수준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작
  - 현재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

### □ 아동수당법의 도입배경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20조에 의거하여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시작
  -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이 진행 중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조’에 명시된 다음의 3가지 목적으로 도입

1)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010-2827-5673, welconomics@daum.net)

-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현행 아동수당법의 지급대상과 금액〉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 아동수당법의 변천

○ 2018년 3월에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현재까지 금액의 변화는 없이 지급대상만 순차적으로 확대

- 다만 2021년 12월 일부개정에서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수당의 추가지급 조항이 신설

### 〈아동수당법의 변화〉

제정 및 개정 시기	지급대상	금액
2018년 3월 제정	경제적 수준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sup>2)</sup>
2019년 1월 일부개정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월 10만원
2021년 12월 일부개정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월 10만원 <sup>3)</sup>
2021년 12월 일부개정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월 10만원
2023년 6월 일부개정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월 10만원 <sup>4)</sup>

자료: <https://www.law.go.kr/LSW//main.html>

## □ 아동수당의 중앙정부 유사정책들

○ 첫만남이용권

- 2) 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3) 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4) 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 후 출생아 당 각 1회에 한하여 첫째 자녀 200만원, 둘째 자녀부터 3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
- 부모급여
  -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모든 아동(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가정)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유치원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세부터 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
  -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 농어촌 아동에게는 월 10~15.6만원 지급

## 2. 아동수당의 기본소득적 성격

### □ 아동수당은 ‘범주형 기본소득’이자 ‘사회수당’의 성격

- ‘기본소득’이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
-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특정 범주의 인구 집단으로 제한하는 기본소득
- 사회수당은 공공부조와 같은 잔여적 사회보장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제도를 의미<sup>5)</sup>
  - 첫째, 사회수당은 자산조사(Means-Test), 근로참여 등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소득보장 제도
  - 둘째,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집단(Demogrant)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소득보장 제도
  - 셋째, 급여에 있어 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로서 보완적 소득보장 제도
  - 넷째,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장 제도
  - 마지막으로 사회수당은 일반조세를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

### □ 사회수당으로서 ‘아동수당’은 본질적으로 ‘범주형 기본소득’과 동일한 의미

5) 노대명 외(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연구 2009-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아동수당의 현황과 성과

#### □ 아동수당 수급자 수와 예산 변화

- 지원 대상 아동 연령 증가 시 수급자 아동 수가 증가하고,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출생아 수 감소로 수급자 아동 수가 감소
- 해당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대상 아동 규모의 증감에 따라 총예산도 변화

#### 〈아동수당 수급자 수 및 예산〉

(단위: 만명,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 수	238	247	263.5	247.2	273.2	249.9
예산	7,096	21,627	22,834	22,195	24,039	22,564

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 아동수당 지급율 및 만족도 변화<sup>6)</sup>

- 아동수당 지급률은 매년 연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수급한 아동의 비율
  - 2018년 선별지급에서 2019년 보편지급으로 전환된 직후 급격히 상승하여 이후 일정 비율을 유지
- 아동수당 만족도는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
  - 2022년의 경우 전년도 실적 대비 112.9%를 달성<sup>7)</sup>
  -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아동수당 지급율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동수당 지급율	79.6 <sup>8)</sup>	97.6 <sup>9)</sup>	97.2	97.7	97.5
아동수당 만족도	71.4	71.5	74.6	73.1	82.5

자료: 최경덕 외(2023).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율'과 '아동수당 만족도'를 아동수당에 대한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7) 전년도 실적이 다음 연도 목표치가 됨

8) 2018년 9월 기준

9) 2019년 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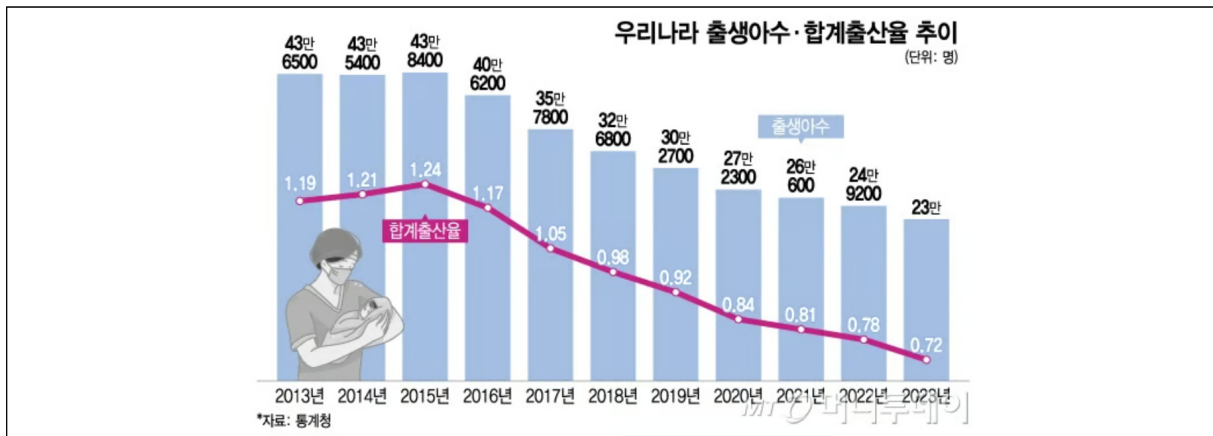
## 4. 현행 아동수당법의 문제점

### □ 아동수당 지급과 합계출산율 문제

- ‘아동수당법’에서 아동수당을 ‘출생을 증가’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분야 정책’으로 명시
- 그러나 2018년 아동수당 지급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동수당 역할 미비

####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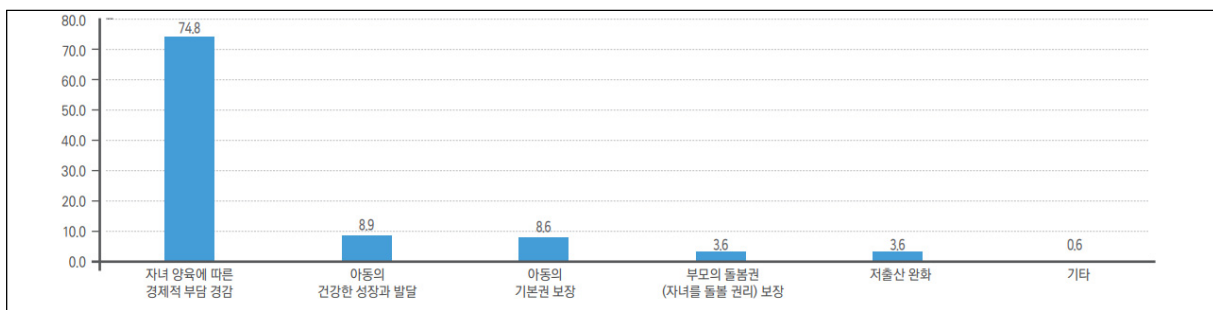
자료: 머니투데이(2024. 2. 28)

### ○ 아동수당 수급 부모의 아동수당 목적에 대한 인식

- 실제로 아동수당 수급 부모들은 아동수당을 ‘저출산 완화’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었으며, ‘저출산 완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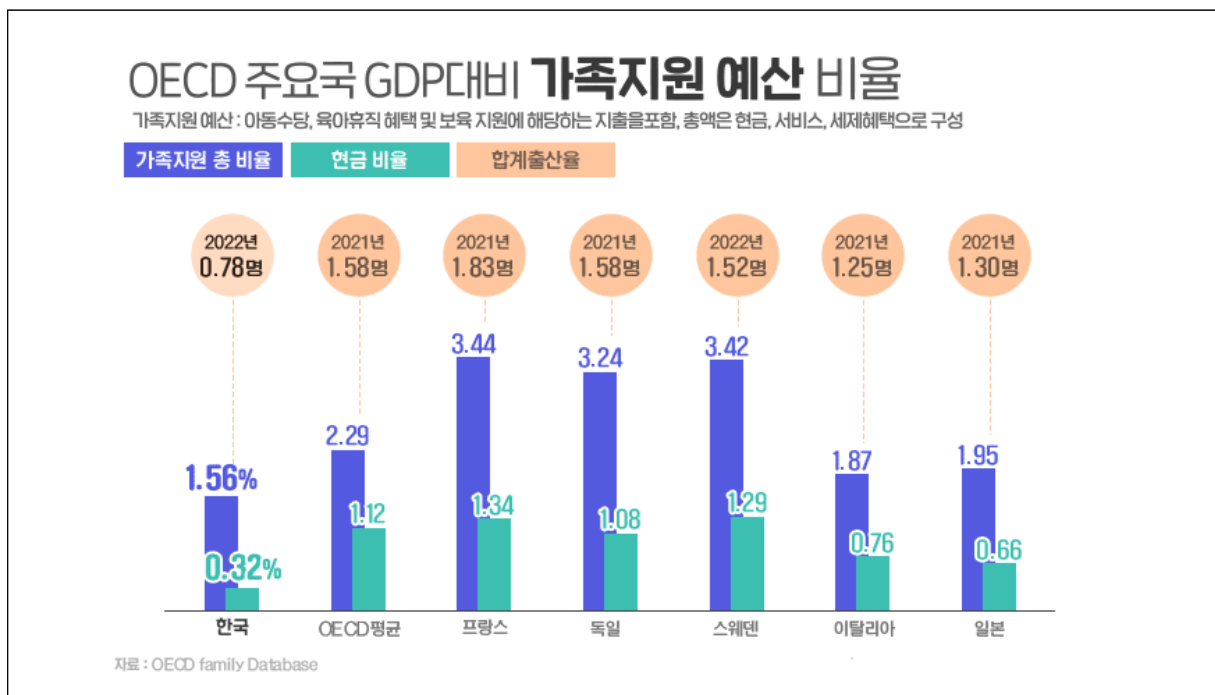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 외(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아동수당의 지원금액과 지급대상 문제

- GDP 기준 OECD 평균과 주요국 대비 가족지원 예산과 현금지원 비율이 현저히 부족
  - GDP 기준 OECD 평균 가족지원 예산과 현금지원 비율이 2.29%와 1.12%인데 반하여 한국은 1.56%와 0.32%에 불과
  - 특히 부모급여를 포함한 아동수당이 영아기(0~1세)에 집중되어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비

### 〈OECD 주요국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율〉

(단위: %)



자료: CBS노컷뉴스(2023. 12. 15)

-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부분 아동기 전체를 아우르는 연령대에 아동수당을 지급
  - 한국의 경우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동수당법에서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아동수당을 가구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연령과 금액을 추가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다수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대상〉

국가	대상
영국	- 만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풀타임 노동자 가구의 20세 미만 아동
스웨덴	- 만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초등학교 학생 - 학습장애아동은 연령제한 없음
프랑스	- 20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가족수당 지급 -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출생수당과 기초수당(3세 미만) 지급
독일	-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수당과 아동양육수당 추가 지급
이탈리아	-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가족부양수당 추가 지급
일본	- 중학교 졸업 이하의 아동

자료: 정익중 외(2021). 아동복지론. 학지사



## 5. 아동수당법의 개선방안

### □ 현재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 2024년 7월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은 총 7건이며, 모두 지급대상의 확대와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동소이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14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차이

#### 〈아동수당법의 일부개정안〉

발의일자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2024. 5. 20.	박정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24. 6. 5.	전진숙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2024. 6. 14.	박성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24. 6. 17.	용혜인 <sup>10)</sup>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 14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 6. 18.	한병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8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 18세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 지급
2024. 6. 20.	이수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2024. 7. 5.	박민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자료: 대한민국 국회 의안현황

(<https://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menuNo=600232&cntsDivCd=BILL>)

### □ 현행 아동수당법의 개선방안

- 아동수당의 목적에 맞게 지급대상과 급여액 확대
  - 아동수당이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액과 지급대상으로 설계

10) 명칭을 '아동 기본소득법'으로 개정

- 더 나아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학령기를 아우를 수 있도록 연령대를 더욱 확대하여 설계
  - 아동복지법 등 타법과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국내의 아동 관련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설계
- 아동수당을 아동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 아동수당을 보편적인 수당으로써 정액 급여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
  -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이나 장애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차등 지급 방식으로 설계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으로 설계
- 아동수당을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된다면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계좌로 아동수당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설계
  - 아동수당은 본질적으로 아동을 위한 수당이므로 아동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아동수당의 ‘기본소득적’인 의미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연령대에서 아동수당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설계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S E C T I O N 2

토론

윤형중  
랩 2050 대표



# 저출생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짓말

## - OECD 평균 수준의 Family 지출부터 시작하자

윤형중 랩 2050 대표

- 저출생 문제를 바로 돈과 연결하는 관점이 우려스럽지만, 돈 문제부터 따지지 않을 수 없음. 그동안 “저출생에 엄청난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사회 전반에 퍼진 지배적 인식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
- 우선 “저출생에 엄청난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인식이 왜 문제일까. 두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임.
  - 1)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엔 동의하지만, 이미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돈을 비효율적으로 쓴 게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
  - 2)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데다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쓰면서 수혜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강화.
- 한 해 출생아수 30만명이 깨진 2020년의 통계가 공개된 2021년부터 후자의 인식(저출생 자체가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은 희박해졌지만, 그전까진 ‘저출생에 재정을 많이 쓴다’는 인식이 온라인 댓글, 커뮤니티 등에서 **양육자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주요 재료로 활용**됨. 이는 그저 음성화된 공간에서의 양육자 혐오의 문제가 아님.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됐고, 민간에선 노키즈존이 확대됐으며 심지어 겨울 왕국2가 개봉한 2019년 말엔 ‘노키즈 개봉관’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sup>1)</sup>까지 있었음. 정부 정책 중에선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도입한 ‘맞춤형 보육’이 이런 인식이 반영된 정책이었음. 맞춤형 보육정책의 핵심은 전업주부 아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시간을 하루 6시간(기존 8시간)으로 제한한 것이었고,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반발하면서 휴원 및 집회 등의 보육대란이 발생함. 보육기관이 반대한 이유는 ‘맞춤형 보육’에 적용되는 아이의 보육료가 적게 책정되기 때문. 당시 양육자들의 목

1) 미디어오늘, ‘언론이 만드는 노키즈존’, 윤형중 칼럼, 2019.12.8

소리는 공론장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음. 맞춤형 보육정책은 여성의 입장에선 경력이 단절되고 취업을 못하면 차별 받는 정책이고, 또 아이가 보육기관에서 '적은 보육료를 받는 대상'이란 취급을 받게 되는 정책이었음.

- 정부가 어떤 계층, 대상에게 돈을 많이 쓰고 있어도, '많이 쓴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문제는 실제로 돈을 많이 쓰고 있지도 않다는 것임.
-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허구적인 개념임. 누구나 저출산 예산을 한 해 재정에서 5조원에서 100조원까지 고무줄처럼 줄이고 늘리는 것이 가능함. 군 인력 개편, 아동학대 방지, 시설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아동·청소년·여성·가족과 관계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업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지적하는 연구와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왔으나, 지배적 인식을 바꾸진 못하고 있음.
- 실제 한국 정부가 저출산에 얼마의 돈을 쓰는가. 추상적인 개념인 '저출산'보단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구체적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OECD는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구축해 회원국의 사회복지 지출과 추세 비교가 가능함. OECD SOCX 항목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저출산 예산'과 달리 실제 국제 비교에서 사용되는 분야별 예산의 규모가 확인됨.

※ 사회복지지출(SOCX)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노인(old age): 노후를 대비한 연금 및 서비스 지출.
  - 유족 지원금(Survivors' benefits): 사망한 가족 구성원 (주로 배우자나 부모)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 건강 (Health): 공공 및 사적 건강 서비스 및 관련 혜택에 대한 지출.
  - 장애 및 근로무능력 지원금(Incapacity-related benefits): 장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에 관련된 지원금.
  - 가족 지원금(Family benefits): 아동 수당,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 관련 지출.
  - 실업 혜택 (Unemployment benefits):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 등 지출.
  - 주거 지원금(Housing benefits): 주택 지원 혜택과 관련된 지출.
- 여기서 가족지원금(Family benefits)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수당 등의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포함함. 단, 교육과 건강관련 지출은 제외됨.

(단위: GDP 대비 비율, %)

국가	1990	2000	2005	2010	2015	2019
스웨덴	4.0	2.8	3.1	3.4	3.5	3.4
프랑스	2.4	3.0	2.9	2.9	2.9	2.7
독일	1.8	2.1	2.1	2.2	2.3	2.4
영국	1.8	2.4	2.8	3.9	3.4	2.4
OECD 평균	1.6	1.8	1.8	2.2	2.1	2.1
일본	0.3	0.5	0.7	1.1	1.4	1.7
스위스	1.1	1.4	1.5	1.5	1.7	1.7
이태리	0.9	1.2	1.2	1.3	1.4	1.4
한국	0.0	0.1	0.2	0.7	1.1	1.4
스페인	0.3	0.9	1.2	1.4	1.2	1.3
멕시코	0.1	0.6	0.9	1.0	1.0	0.6
미국	0.5	0.8	0.7	0.8	0.6	0.6

## 그림 83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변화 추이

(원자료 : OECD SOCX, extracted Oct. 2023,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 재인용)

- 한국은 OECD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일 뿐 아니라 전례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Family Benefits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나라임.
- 가족지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 인구수 감소, 연령 범위 미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임.

## 〈아동수당 지원 추이〉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지급금액	예산액	실집행액	지급대상	지급아동
2019	0.1	2,162,729	2,153,107	2,341,969	2,681,957
2020	0.1	2,283,374	2,297,577	2,634,761	2,536,664
2021	0.1	2,219,455	2,182,769	2,471,665	2,377,659
2022	0.1	2,379,318	2,445,394	2,704,793	2,767,534
2023	0.1	2,256,398	-	2,498,776	-
2024	0.1	2,111,471	-	2,338,242	-

자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2023년부터 시행함. 아동수당의 미진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나, 여전히 미진한 수준

의 정책임. 부모급여는 기존의 아동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시 보육료 지원 대신 받는 지원금)을 흡수한 형태로 2023년 도입 당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급여는 0세에 월 20만원(부모급여 70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 20만원), 1세에겐 전혀 받는 금액이 없는 상황임. 2024년 예산안 기준 부모급여는 2조 8886억원, 첫만남이용권은 3803억원임. 여기서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을 흡수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함. 가정양육수당은 2021년 7607억원, 2022년 4829억원, 2023년 1758억, 2024년 1080억원으로 쪼그라들었음.

구분	2023	2024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첫째) 일시금 200만원 (둘째 이상) 일시금 300만원

- 아동수당 지급액과 범위는 OECD 국가들에 비춰봐도 상당히 미진한 수준임. 지급 범위를 따져보면 OECD 국가 32개국 중 15세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11개국이고, 17세 이상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19개국이며, 학생이거나 직업 훈련 등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국가는 19개국임.<sup>2)</sup>
- 기초연금과 비교해도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월 10만원이 유지됐으나, 기초 연금은 같은 기간 월 20만 6050원에서 월 33만 3840원까지 증액된 상황임. 기초 연금 증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에서 25만원, 25만원에서 30만원 등 상징적인 금액으로 인상될 땐 대통령 선거 공약과 연계한 ‘법률 개정’이 있었고, 다른 시기의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도록 한 법률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임. 아동수당은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조차 없는 상황임.

2) 출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이고, 이 보고서에서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로 하고 있음.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

국 가	지급액	원화 환산액
스웨덴	월 1,250 크로나	월 153,913 원
독 일	월 250 유로	월 311,358 원
영 국	(첫째) 주 21.8 파운드 (둘째 이상) 주 14.45 파운드	35,895 원 (4주: 143,580원) 23,793원 (4주: 95,172원)
캐나다	(6세 미만) 연 최대 6,833 달러(월 583 달러) (6~17세) 연 최대 5,903 달러(월 492 달러)	월 578,703원 월 488,374원
일 본	(0~3세) 15,000엔 (3세~초등학교) 첫째·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15,000엔 (중학생) 10,000엔 (소득제한 이상) 5,000엔	월 135,914원 월 90,609원 월 135,914원 월 90,609원 월 45,305원

주1: 원화 환산액은 2023.10.16. 매매기준율 기준

주2: 일본의 경우, 소득제한 철폐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2023. 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158면) 재구성

### 〈기준연금액 인상 연혁〉

적용기간	기준연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인상 구분
2014. 7. ~ 2015. 3.	20만원	-	법률 제정
2015. 4. ~ 2016.12.	20만 2,600원	1.3	물가상승률
2017. 1. ~ 2017. 3.	20만 4,010원	0.7	
2017. 4. ~ 2018. 3.	20만 6,050원	1.0	
2018. 4. ~ 2018. 8.	20만 9,960원	1.9	
2018. 9. ~ 2019. 3.	25만원	19.1	법률 개정
2019. 4. ~ 2019.12.	25만 3,750원 * 소득하위 20% 30만원	1.5	물가상승률
2020. 1. ~ 2020.12.	25만 4,760원 * 소득하위 40% 30만원	0.4	
2021. 1. ~ 2021.12.	30만원	17.8	법률 개정
2022. 1. ~ 2022.12.	30만 7,500원	2.5	물가상승률

자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결론

- 발제자가 제시한 아동수당법의 개선방안 3가지에 모두 동의함.
  - 1) 지급 대상과 금액 상향 : OECD 평균에 이르려면 GDP 대비 0.7%p(약 14조원)의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고, 한국의 저출생 상황을 감안하면 OECD 평균을 넘어 상위권의 Family benefits 규모가 되어야 함. 최소 30조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수당과 출생기본소득을 비롯해 국공립 위주의 보육체계, 초등돌봄 체계 등이 필요함.
  - 2) 아동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 기본소득은 중층적인 안전망의 1층임. 보편적 수당과 선별적인 복지는 병행 되어야 함.
  - 3)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에게 직접 아동수당 지급 : 기본권에 부합하고,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도 부합함. 단, 예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가장 심각한 나라에서 가장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엄청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호도하는 특이한 상황임.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 초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총력 규모'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임. 사실상 의미있는 구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도 총력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정신승리의 상황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함.
- 아동수당 확대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강화하는 성격이 있고, 출생기본소득은 기본자산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음.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여러 차이와 장단점이 있으나, 두 논의 모두 '재원'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본자산은 '상속세'와 자주 연결되는 제도임. 최근 상속세 논의와도 연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감행한 감세 조치(2022년 세법개정안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5년간 90조원 규모의 감세 효과)를 복원해 그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아동수당, 출생기본소득 등 현금성 정책 뿐 아니라, 여전히 미진한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돌봄 절벽 등의 '민간 위주의 보육 돌봄 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한 정책적 전략과 재원 확보도 병행되어야 함.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 Birth-Basic Income Forum

S E C T I O N 2

토론

김수호  
마음한장 프로덕션 대표



# 세 아이 부모의 현행 아동수당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

김수호 마음한장 프로덕션 대표

## 서론

2012년 영화 ‘댄싱퀸’의 명장면 중 서울시장 후보경선 토론회 장면에서 주연인 황정민 배우의 “분유 한 통에 얼마 줄 아세요?”라는 대사에 기존 정치인 두 명이 분유 한 통의 가격을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고 황정민 배우는 기존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출산 지원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실제 육아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참여로 세상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요즘 분유 한 통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기저귀값은 얼마나 될까요?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가요?
- 부모급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가요?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 기저귀 바우처,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가요?
- 영아(0~1세)를 키울 때 집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스, 전기, 수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현장의 부모들이 매일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아빠 김수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현황과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개인 경험을 통한 현실 고찰

저는 만 4세, 2세, 1세의 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우리 삶의 기본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대부분 금액이 보육료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2세까지 분유, 이유식, 기저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오롯이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국가가 영유아부터 아동까지의 보육과 기본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영아기(0~1세)에만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이 아동수당뿐이어서 보육을 넘어 자녀에게 추가적 지원하고자 할 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출산을 하고 여성들의 퇴사가 많아져 외벌이가 되는 부부들이 많은 데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부모의 입장입니다.

## 외벌이 가정의 현실과 맞벌이의 증가

저희 가정도 외벌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42.8%의 부부가 외벌이 부부입니다.

외벌이 가정은 수입이 한 명의 임금만큼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영유아 주요 11개 품목 중 6개의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전체 평균치인 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저귀값은 9.6%, 분유 6.3%, 유아용 학습 교재 7.5%, 유아동복은 12.1%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 시설 이용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품목의 물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육아 관련 물품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성격이 강해서 육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육아 관련 품목의 가중치를 재산정한 육아물가지수를 개발해 발표해왔지만 2020년부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가가 육아하는 부부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가 5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해마다 가장 높은 통계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부부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는 생기지만 아이를 낳고 돌볼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즉 딩크족이 늘어나는 현상도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비교하면 외벌이 부부가 더 출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_맞벌이 부부 유자녀 비율 49.8%, 외벌이 부부 유자녀 비율 59.4%)

## 주거와 출산의 관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9.6%이며,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5%로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때 주거 안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주택 부부라 할지라도 주택담보 대출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인 위축감이 있는 부부도 많이 있어 출산을 고민하거나 포기하는 부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부부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안정', '주거의 안정', 그리고 '시간의 안정'이 고루 필요합니다.

출생 기본소득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에너지 등을 복합적으로 엮어 출생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경제적, 주거적, 시간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학령기 청소년들에게도 폭넓게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부모들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로서, 저는 매일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새 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순간, 분웃값과 기저귀값이 부담스러울 때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와중에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죄책감은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분윳값, 기저귀값, 보육비, 학원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들이 앞으로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더 나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